

3-33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

2002. 5. 1. 제정

2019. 1.31. 개정

주무부서 : 국제처 국제교류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와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과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기본원칙과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개정 2014.12.4.>
2. 교육 및 연구부서의 국제교류활동
3. 외국대학교와의 교수·직원·연구원·학생 교류
4.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시행

제2장 국제화위원회<개정 2014.12.4.>

제3조(위원회) 본 대학교 국제화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국제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장,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행정부총장, 안성부총장, 의무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국제처장과 국제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국제교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2016.5.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타 제반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국제처장이 그 회무를 관장한다. 실무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은 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3장 국제교류 협정체결 및 교류시행

제9조(기본원칙) 교류협정 체결은 상호 호혜성과 지속적 교류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업무관장)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과의 협정은 국제처에서 주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고 시행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학과(부), 대학, 대학원, 각 연구소 및 행정부서에서 체결하는 협정은 국제처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고 시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협정서의 서명 주체인 경우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6.13., 2014.12.4.>

제11조(서명권자)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과의 일반협정 또는 양해각서의 서명권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제처장이 서명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6.13., 2014.12.4.>

②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과의 일반협정 또는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되는 개별사업 합의서의 서명권자는 국제처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학과(부), 대학, 대학원, 각 연구소 및 행정부서 범위의 협정 서명권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12조(체결절차) ①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과의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4.12.4.>

1. 협정체결 요청부서 협정 안 자체 검토
2. 국제처와 협정에 관한 사항 사전 논의<개정 2011.6.13., 2014.12.4.>
3. 협정 대상기관과 협정 내용 합의
4. 국제처장 협조를 거쳐 총장 승인<개정 2014.12.4.>
5. 협정 체결

② 학과(부), 대학, 대학원, 각 연구소 및 행정부서 범위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협정서의 서명 주체인 경우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6.13., 2014.12.4.>

1. 학과(부), 대학, 대학원, 각 연구소 및 행정부서에서 협정 대상기관과 협정 내용 협의

<개정 2011.6.13., 2014.12.4.>

2. 해당 교류단위에서 협정목적, 대상기관, 추진배경, 협정내용, 협정서를 담은 협정추진계획서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 협의<개정 2014.12.4.>
3. 국제처장 협조를 거쳐 총장 승인<개정 2014.12.4.>
4. 협정 체결

제13조(교류시행) ① <삭제 2014. 9. 1>.

② 외국대학교 및 외국기관의 협정에 의한 교류시행은 국제처 국제교류팀이 주관한다. 다만, 교류사업의 범위가 학과(부), 대학, 대학원 및 각 연구소에 한정되는 경우, 국제처 국제교류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교류단위에서 교류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6.13., 2014.12.4.>

③ 교환학생 교류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대학 및 대학원에 한정된 교류에 한해 학과(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교환교수 교류는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국제처 국제교류팀과 교무처 교무팀의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④ 기타 행정부서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주관하게 될 경우, 국제처 국제교류팀을 경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⑤ 각 단위부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제교류 현황을 매 학기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통보하여 학내 제반 국제교류 현황이 취합되도록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4장 국제교류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제14조(용어의 정의) ① 국제교류학생이라 함은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생, 자비유학생을 통칭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② 교환학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등록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삭제 2012.8.31>

④ 방문학생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규과정 또는 국제처가 승인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⑤ <삭제 2019.1.31.>

⑥ 자비유학생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교류협정 체결대학이 아닌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2.4.>

제15조(지원자격) ① 교환학생, 방문학생 및 자비유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2.8.31.>

1. 지원 당시 본 대학교에서 1차 학기 이상 7차 학기 이하 이수한 학부생, 1차 학기 이

상 2차 학기 이하 이수한 대학원생<개정 2014.12.4.>

2. 직전 학기 평점 및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3. 외국대학교 수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② <삭제 2019.1.31.>

제16조(선발) ①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의 선발은 교류협정에 따른 자격을 기준으로 국제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8.31., 2014.12.4., 2019.1.31.>

② 자비유학생의 선발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 학점인정이 가능한 외국대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출서류) 국제교류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제처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

1. 교환학생(방문학생) 신청서(소정의 온라인 지원양식 출력본) 또는, 자비유학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6.13., 2012.8.31., 2019.1.31.>

2. <삭제 2014. 9. 1>

3. 어학능력인정서 원본 1통

제18조(유학기간) ①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은 유학기간을 1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2.8.31.>

② <삭제 2019.1.31.>

제19조(등록) ① 교환학생은 유학기간 중 본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6.13.>

② 방문학생은 유학기간 중 외국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대학교의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13.>

③ <삭제 2012.8.31.>

④ <삭제 2019.1.31.>

⑤ 자비유학생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에 각각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유학에 필요한 교통비, 체재비 등 제반경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학점인정) ① 국제교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 대학교의 정규 성적표에 의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규과정 외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유관 대학 및 대학원의 협조와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규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3., 2014.12.4.>

② 국제교류학생의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 각 교육단위의 학기별 기본 수강가능 학점 수내에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합산하고 본 대학교 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 대학교 학과(부)장의 학점이관 승인을 받은 과목의 성적을 P(pass)로 표기한다.<개정 2014.12.4.>

③ 취득학점 성적표기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 성적평가 등급으로 환산하여 성적을 표기하고 본 대학교 평점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외국대학 파견 전에 학점인정 특별 신청서를 해당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31., 2014.12.4.>

④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소정의 학점인정서를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국제처장의 검토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본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개정 2012.8.31., 2014.12.4.>

⑤ 국제교류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계절학기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⑥ <삭제 2012.8.31.>

⑦ 외국대학교 취득학점의 인정은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1학기 내로 제한한다.

⑧ 취득학점의 학점인정 기준은 16시간을 1학점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인정한다.

제22조(복수학위) <삭제 2019.1.31.>

제23조(이수계획서) ①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출국 전 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3-1호 서식) 다만,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은 별도의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제처장의 검토를 거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3-2호 서식)<개정 2014.12.4., 2019.1.31.>

② 사정에 의해 사전 이수계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대학교에서 수강신청 후 2주일 내에 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목 및 교양과목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13.>

제24조(경험보고서) 국제교류학생은 유학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즉시 국제교류팀에 경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5조(최종학기 등록) 교환학생, 방문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최종학기를 전액등록 또는 학점등록 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3., 2019.1.31.>

제5장 국제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

제26조(용어의 정의) ① 국제방문교류학생은 초청 교환학생, 초청 방문학생을 통칭한다.
<개정 2011.6.13., 2014.12.4., 2019.1.31.>

② 초청 교환학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③ 초청 방문학생은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학생교류 정원을 초과하여 파견하는 학생 또는 교류협정 체결대학이 아닌 외국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3., 2014.12.4.>

④ <삭제 2019.1.31.>

제27조(지원자격)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국제방문교류학생의 지원자격은 소속대학교 국제교류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1.6.13., 2014.12.4.>

제28조(지원절차) ①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는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명단과 교환학생 지원 서류를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본 대학교 국제교류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2.4.>

② 지원서류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 9. 1>

제29조(수학허가) 국제교류팀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의 국제교류부서에 국제방문교류학생의 수학허가를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3.>

제30조(유학기간) 국제방문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기간은 교류협정체결 외국대학교와의 합의에 의한다.

제31조(등록 및 장학) 교류협정서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학 허가를 받은 국제방문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등록금은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수강신청) 국제방문교류학생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3.>

제33조(한국어교육원 수강에 대한 학점인정 및 수강료면제) <신설 2011.6.13.><삭제 2014. 9. 1>

제34조(학점인정) 국제방문교류학생이 수학한 교과목에 대해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해 학점을 부여하고 소속대학교에 성적표를 발송한다.<개정 2011.6.13.>

제35조(초청 복수학위생의 학위수여) <삭제 2019.1.31.>

제36조(기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8.3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중 제21조 2항은 2014학년도에 파견된 국제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중 제21조 4항, 제23조는 2015학년도 파견 국제교류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5.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1.31.>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4.9.1>

국제방문교류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을 위한 지원서류 목록

1. 교환(방문)학생 지원서 1부(온라인 지원양식)
2. 성적증명서 (Home University)
3. 사진 2매
4. 여권사본
5. Nomination Letter
6. 재정보증 증명서류
7. 기숙사 신청자 서약서(기숙사 신청자에 한함)
8. 학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자비유학생 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학번	
소속	대학		학과	학차		
연락처					이메일	
유학국가					유학대학	
프로그램명 (세부명)					유학대학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학기)	
학점체계	본교와 동일 ()				본교와 상이 상대교 ()학점이 본교 ()학점으로 인정	
	* 본교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공인어학성적	종류		점수		총 평균 평점	/ 4.5
보호자	성명				관계	지원자의 부, 모, 기타()
	주소				전화	
					핸드폰	

본인은 위와 같이 자비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학점인정을 위해 외국대학 수학기간 중 본교에 등록하고 아울러 중앙대학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보호자 : _____ (인)

- 첨부 : 1. 해당 대학 입학허가서
 2. 성적증명서
 3. 수학계획서
 4. 비자사본
 5. 상대교 학점체계 관련 증빙서류 (본교와 상이한 경우)
 6. 해당국 4년제 정식 인가대학여부 확인서 (인가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 · 방문학생학점인정서(전공)

소속대학		소속학과(부)			
성명		학번			
파견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성적표수령공지일	년 월 일		
파견대학 취득학점(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할 것)		본교 인정학점			
과목명(과목별로 영문으로 필히 작성)	학점수	년도-학기	이수구분	인정학점수	년도-학기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월 일					
전 공	대 학	학 과(부)장	성 명 :	(서명)	
부·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대 학	학 과(부)장	성 명 :	(서명)	
※ 이수구분 -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유의사항	* (국제교류팀) 성적표 수령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해당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 * 상대교 수학 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학점인정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제교류팀) 성적표 수령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해당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				
제출서류	* 학점인정서, 해외자매대학 성적표 원본 각 1부				
처리절차	* 서류준비 → 소속학과(부)장의 승인 (다전공을 인정받을 경우는 해당학과(부) 장 승인도 필요) →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 제출				

교환 · 방문학생학점인정서(자유선택)

소속대학		소속학과(부)			
성명		학번			
파견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성적표수령공지일	년 월 일		
파견대학 취득학점(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할 것)		본교 인정학점			
과목명(과목별로 영문으로 필히 작성)	학점수	년도-학기	이수구분	인정학점수	년도-학기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월 일					
국제처장		성명 :		(서명)	
교무처장		성명 :		(서명)	
※ 동 학점인정서는 자유선택으로 학점이관 하고자 하는 과목에 한함					
유의사항	* (국제교류팀) 성적표 수령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자유선택 학점인정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 * 상대교 수학 후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학점인정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제교류팀) 성적표 수령 공지 안내 후 4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4주 이내에 학점인정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				
제출서류	* 학점인정서, 해외자매대학 성적표 원본 각 1부				
처리절차	* 서류준비 → 국제처장 검토 → 교무처장 승인				

교환/방문학생 과목이수계획서(전공)

대학		학과(부)	
성명		학번	
파견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이메일	
파견대학 이수예정 과목		본교 인정학점	
과목명	학점 수	해당학기	이수구분
			인정학점 수
			해당학기
합계			합계
상기 이수계획에 준한 파견대학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월 일			
전 공	대학	학과(부)장	성명 : (서명)
부·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대학	학과(부)장	성명 : (서명)
※ 이수구분 -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 과목이수계획서는 학과장님과 향후 이수 계획 및 전공인정 여부 등을 상의하기 위함 이며, 학점수는 국제교류 규정에 의해 국제교류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됨.			

교환/방문학생 과목이수계획서(자유선택)

대학		학과(부)	
성명		학번	
파견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이메일	
파견대학 이수예정 과목		본교 인정학점	
과목명	학점 수	해당학기	이수구분
			인정학점 수
			해당학기
합계		합계	
상기 이수계획에 준한 파견대학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월 일			
국제처장		성명 :	(서명)
교무처장		성명 :	(서명)
※ 동 과목이수계획서는 자유선택으로 학점인정 여부 등을 상의하기 위함이며, 학점수는 국제교류 규정에 의해 국제교류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됨.			